

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. 2. 7 선고 2022가단113682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용수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욱현

변 론 종 결 2022. 12. 13.

판 결 선 고 2023. 2. 7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와 2020. 12. 21. 접수 제1351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03. 4. 14.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고 한다)을 매수하고 그 무렵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, ① 주식회사 C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와 2008. 6. 27. 접수 제100916호로 채권최고액 24,000,000원, 채무자 원고,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, ② 주식회사 C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 같은 등기소 2011. 3. 25. 접수 제30288호로 채권최고액 2,400,000원, 채무자 원고,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, ③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같은 등기소 2013. 8. 1. 접수 제81919호로 채권최고액 36,000,000원, 채무자 원고,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.

다. 원고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중소기업은행은 2019. 9. 11.경 위 ③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, 위 법원은 2019. 9. 11.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고 2020. 9. 2. 매각명령을 하였다.

라. 피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여 2020. 12. 17.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,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.

마. 피고는 위 등기소 2020. 12. 21. 접수 제135129호로 위 매각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‘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’라고 한다)를 마쳤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,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원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한 2019. 9. 11.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임의경매절차는 전부 무효이고, 매각허가결정도 무효이므로, 피고가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앞서 든 증거들, 특히 이 법원에 현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 사건 기록에 의하면, 원고 주장과 달리 위 법원이 한 2019. 9. 11.자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명령 전인 2020. 7. 8. 14:11 원고 본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(원고는 이에 따라 위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배당금을 수령하기도 하였다)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기홍

별지